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9. 1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7. 9. 1
- 다. 상 정 일 자 :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7. 9.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강명종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9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부칙 제4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함에 따라 서법부 고유의 공중업무를 일선행정기관인 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사하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서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개정조례 내용중 부칙에 수수료징수를 97. 9. 1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 확정 수수료는 600원,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1건당 수수료를 600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이용, 처리할 수 있게되어 주민에게 추가부담없이 편익을 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의결